

【 9 】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04. .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안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이전에 경감규정을 명문화하여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적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안 제6조의2)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2007.1.11>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 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 중간생략 -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 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9. "주택사업자"라 함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주"라 함은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1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 나.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대통령령 제 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연금의 지급방식)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종신동안 연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장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4. 제1호와 제3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방식

제3조의3(연령)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라 함은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자

제12조의2,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 7,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기간동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이자율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